올바른 합판 구별 및 사용법

- ◆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고시개정 [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720호, 2020.10.13.]
- ▶**가설기자재** 외장재

종 별	시험종목	시험방법	시험빈도	비고
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(KS F 3110) [신설]	겉모양 및 치수		제품규격별	강재틀 합판 거푸집 (KS F 8006) 제외
	휨강성 변형량	VC F 2110		
	도막 및 피복재와 바탕합판의 접착성 (표면가공 거푸집용 합판에 한함)	KS F 3110		
	함수율		필요시	
	밀도	KS F 3110		
	접착성			
	폼알데하이드 방출량	KS M 1998		

▶마감공사(지붕·목공사 포함) 내장재

종 별	시험종목		시험방법	시험빈도	비고
보통합판 (KS F 3101)	겉모양 및 치수				
	접착력	인장전단			
		침지박리			
	함수율		KS F 3101	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	
	밀도				
	봉소 화합물 흡수량				
	폭심, 페니트로티온 흡수량				
	흡습성				
	난연성				
	폼알데하이드 방산량		KS M 1998		

필수확인사항 - 합판 품질표시 내용과 서류 일치 확인

가설기자재



접착성이 약한 준내수합판(Type2)을 거푸집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.

마감공사



폼알데하이드를 많이 방출하는 합판(E2)을 실내용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.

건설공사 품질관리란?

1. 필수 조항

- (1)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
- (2) 연면적이 660㎡(200평)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- (3)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


'품질시험계획' 수립

- ➡ 발주자에게 제출/승인
- ➡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

2. 벌칙 규정

【 건설기술 진흥법 】

• 품질시험계획을 수립 •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 • 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【 주택법 】

- 국토교통부 장관은 품질 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<mark>등록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</mark> 이하의 영업정지 를 명할 수 있음
-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**감리자**는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**시정**을 통지해야 하고, 시정통지를 받고 계속하여 공사를 시공한 **시공자 및 사업주체**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】

• 규격·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 또는 규격·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, 규격·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**판매·유통하거나 통관한 자**는 <mark>3년 이하의 징역</mark>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